

## 2021년 예산 편성 기준표<sup>1)</sup>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	비고
상 담 사 비 및 강 사 비  ※ 상 담 사 및 강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</li> <li>· 인간문화재,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</li> <li>· 정부출연 연구기관장</li> <li>·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</li> <li>· 판/검사,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</li> <li>·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/5급 공무원</li> <li>· 사회복지 기관·시설장</li> <li>·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</li> <li>·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시간 최대 250,000원</li> <li>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,0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</li> <li>*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, 강사의 교통비 (실비)는 필요 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</li> </ul>
동일 급수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</li> <li>· 전·현직 4/5급 공무원</li> <li>· 중소기업체 임원급</li> <li>·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</li> <li>· 인간문화재·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</li> <li>· 통계이론,SAS,SPSS 등의 전문가</li> <li>· 박사학위소지자</li> <li>· 특별강사,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</li> <li>· 사회복지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</li> <li>·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</li> <li>·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시간 최대 230,000원</li> <li>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,000원</li> </ul>	
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각종 교육 운영 및 실기실습 보조요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시간 최대 50,000원</li> <li>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,000원</li> </ul>	
식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 기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5,000원</li> </ul>	
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 기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7,500원</li> </ul>	

※ 위의 예산 편성 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임.

※ 상담사비 및 강사비

-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(주제)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지급

1) ※202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 기준 참고